

##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년월일 : 1991. 7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대통령령(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) 개정(령 제13,403호, 1991. 6.27)에 따라
-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원장의 보직을 복수화 조치하려는 것임.

#### \* 대통령령 개정골자

환경연구분야 업무비중의 확대, 세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연구직열을 보건연구직열과 환경연구직열로 분리

### 주요골자

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렬 “지방보건연구관”을 “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”으로 복수직화(조례 제4조)

충청북도조례제 호

##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(원장) 제1항중 “지방보건연구원”을 “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구조 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4 조(원장) 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 4 조(원장) 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